

『위천119안전센터』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023-1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제안사유

- 원학골 주민의 안전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원거리 사각지대 주민의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
- 경상남도(거창소방서)에서 추진하는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포함되는 공유지(위천면 장기리 509번지, 1,633㎡)에 대하여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거창군의회 심의·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 공유재산 현황

재산 종별	소재지	소유자	지 목	면 적	공시지가	비 고
토지	위천면 장기리 509	거창군	대	1,633㎡	60,200원 (2022년)	

- 영구시설물 축조 주체 : 경상남도(거창소방서)
 - 축조목적 : 위천119안전센터 증축
 - 존치기간 : 영구
-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
 - 합 의 자 : 경상남도지사(거창소방서) ⇔ 거창군수

3. 사업계획

- 증축규모 : 191.42㎡ / 지상 2층(1동) / 철근콘크리트조
- 사업비 : 금1,487,846천원(도비)

4. 심의사항

- 거창군 소유 공유재산 토지(위천면 장기리 509)에
- 경상남도(거창소방서)에서 추진 중인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여부

5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: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: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: 사용료의 감면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추진일정

- 거창군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: 2023. 3월
- 공사착공 및 준공 : 2023. 3월 ~ 12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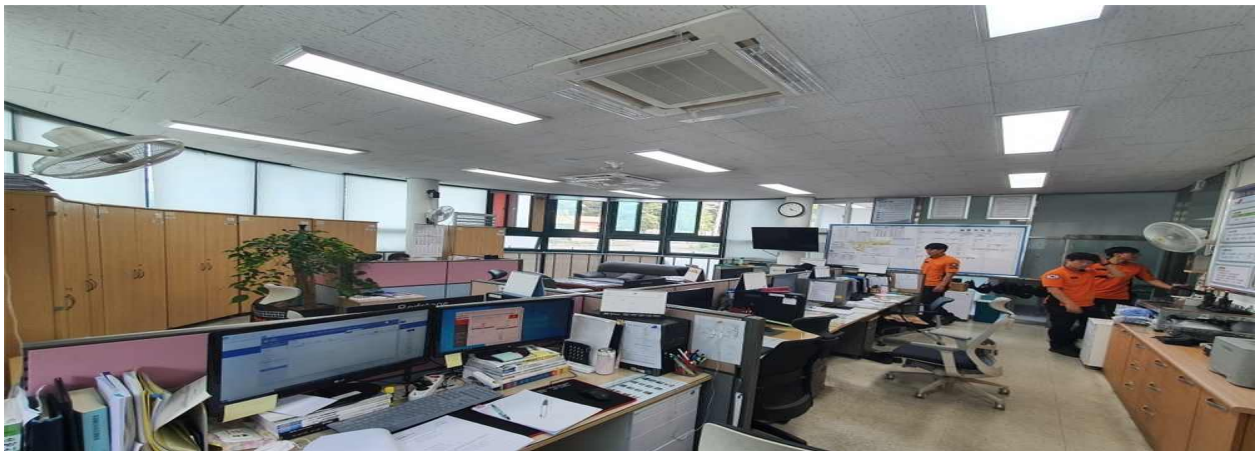
- 붙임 1. 위천119안전센터 전경 및 위치도 1부.
2.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1부.
3. 관련법령 1부.

위천119안전센터

▣ 전 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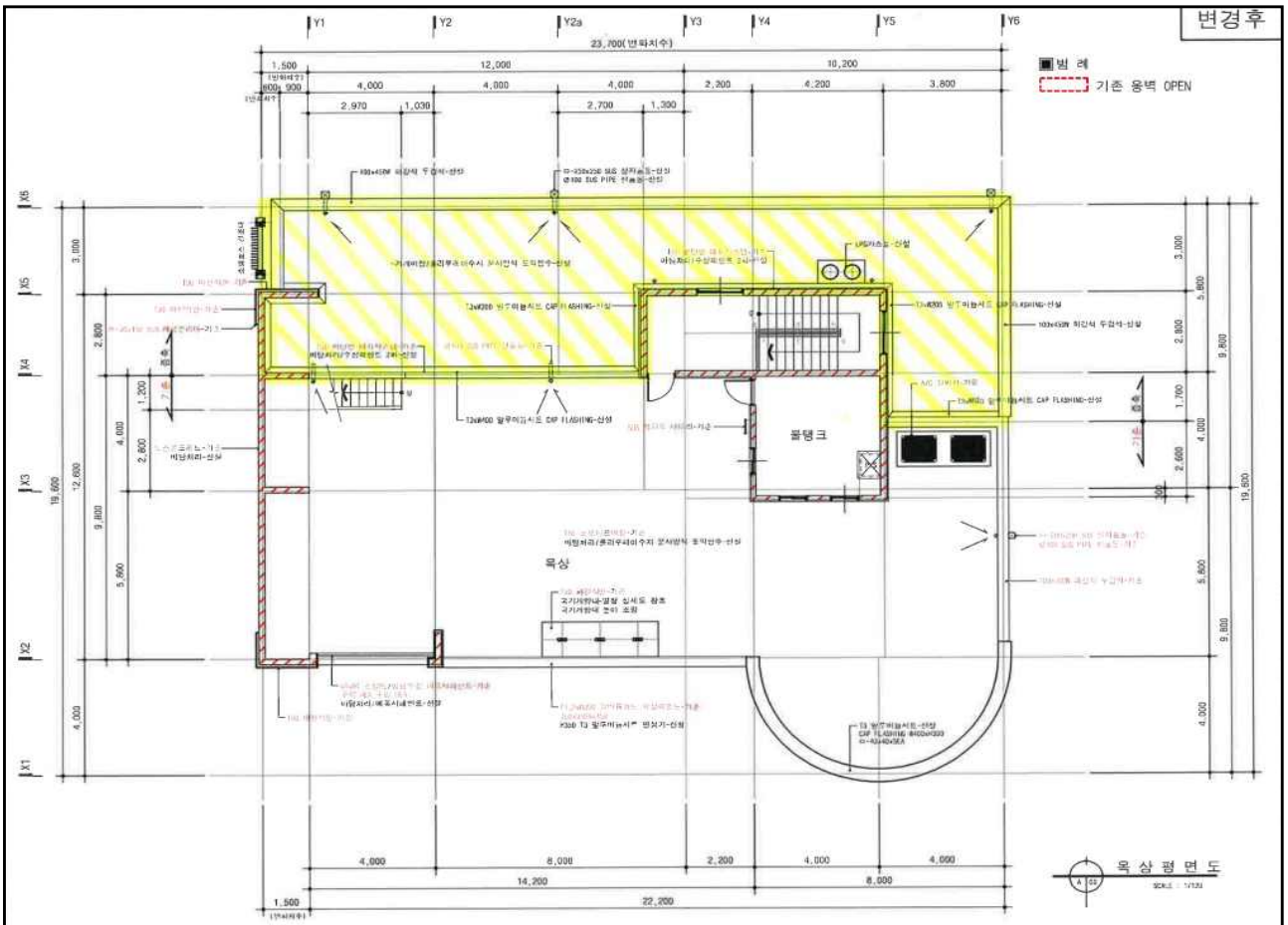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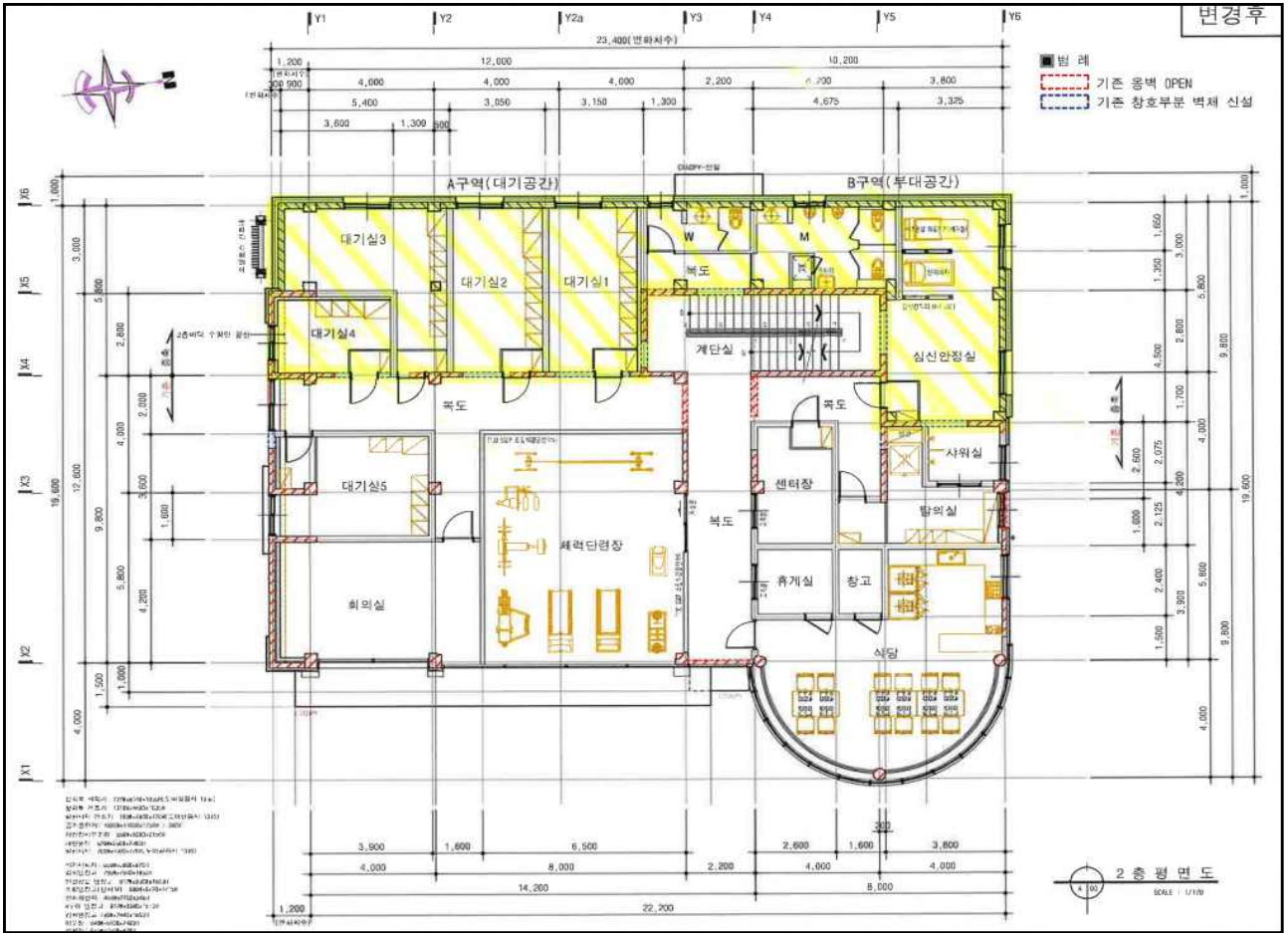
외부전경



내부(사무실)

▣ 건물위치 :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1번지(장거리 509)



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- 2.
- 3.
- .
- .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